

- ◆ 최근 코로나19의 "제3차 대유행"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.
- ◆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, 오·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.

① (인체에 무해한 성분?)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·소독제는 없습니다.

- 모든 살균·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**감염병**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**주의해서 사용**해야 합니다.
- 특히 최근 **코로나19** 방역을 위해 **일반적인 상황에 비해**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신고·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**인체·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**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**필요한 만큼만**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② (정부 승인·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?) 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·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.

- 살균·소독제는 **사용 목적,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***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, 어떠한 용도로 승인·허가 받은 것인지 **확인**하고 사용해야 합니다. **코로나19용 살균·소독제**는 '물체 표면 소독용'으로 인체,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,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,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- 이 소독지침**에서 제시하는 **코로나19 소독용**으로 사용 가능한 **환경부 승인·신고된 살균·소독제**는 WHO,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 **유효성분**(차아염소산 나트륨, 에탄올 등)을 **유효농도**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.

* **감염병 예방용·방역용 소독제**(환경부,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), 일반 물체, 욕실,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(환경부,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), 손소독제(식약처, 의약품 허가), 식품,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·소독제(식약처, 식품첨가물) 등 용도별 승인·허가 여부 확인

**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」의 붙임 7 「**코로나19 살균·소독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**」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하며 **환경부 승인·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(ecolife.me.go.kr)**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

③ (공기를 소독한다?) **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,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.**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, 눈,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.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·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.